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543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및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보호조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안 제2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안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의3)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3의2호와 법 제5조의3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통계등록부의 종류와 구축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외 통계등록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통계등록부 자료의 요청과 제공 방법,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등을 정함

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규정(안 제38조의2 신설)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작성지정기관도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법 제24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정하고, 이 경우에 필요한 요청 방법 및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행정자료 요청기관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화(안 제39조의2 신설)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입수한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전의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의무화한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통제, 암호화 기술의 적용, 접속기록의 보관, 보안프로그램 등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취해야 할 정보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안 제48조의2 신설)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출입통제 보안시설 및 자료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자료입수·관리 목록 공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 점검·보안관리, 통계데이터 분석 교육 및 활용연구 등 수행 사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① 통계청장이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종류별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성별, 연령, 국적, 가구주관계 등 인구 특성에 관한 기본정보를 수록
· 관리하는 인구통계등록부
2.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형태 등 가구 특성에 관한 기본정보
를 수록·관리하는 가구통계등록부
3. 주택의 종류, 건축년도, 면적 등 주택 특성에 관한 기본정보를 수록
· 관리하는 주택통계등록부
4. 사업체명, 주소, 조직형태, 산업분류, 매출액, 종사자, 대표자 정보
등 사업체에 관한 기본정보를 수록·관리하는 기업통계등록부
5. 취업활동에 관하여 인구특성에 관한 기본정보 및 장애여부, 종사상
지위,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등을 수록·관리하는 취업활동통계등
록부

6. 아동가구에 관하여 아동과 부모의 인구특성에 관한 기본정보 및 동거인·부모의 취업활동, 아동의 장애여부, 다문화가구 여부 등을 수록·관리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7. 청년에 관하여 인구특성에 관한 기본정보 및 취업활동, 부모동거, 배우자유무, 자녀수 등을 수록·관리하는 청년통계등록부

8. 그 밖에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청장이 구축·운영하는 통계등록부

② 통계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통계등록부를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민간자료를 말한다.

④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해 매년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의 종류와 구축항목

2. 법 제24조에 따라 통계등록부 구축을 위해 제공받은 행정자료 현황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현황

4. 법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이용 현황

제2조의3(중전의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법 제5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4(중전의 제2조의3)제1항 중 “법 제5조의4”를 “법 제5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5조의4제3항”을 “법 제5조의5제3항”

으로 한다.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4)제1항 중 “법 제5조의5제1항”을 “법 제5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5조의5제2항”을 “법 제5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8조제1항후단”을 “법 제18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을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를 “장(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청은 통계청장으로 한정한다)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을 경유하여 공공기관에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행정자료의 명칭

3.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 및 필요성
4. 행정자료의 내용(성별로 구분되는 행정자료의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된 내용을 말한다)과 범위
5.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6. 행정자료의 제공방법
7.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과의 행정자료 제공 협의 사항
 -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한 행정자료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문서를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문서를 통계청장에게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청장 또는 요청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로 하고, 제39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3. 행정자료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행정자료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5. 행정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포함한 물리적 조치

제45조의3(통계작성기관의 통계등록부 자료의 요청과 제공)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통계등록부 자료의 명칭
3. 통계등록부 자료의 사용 목적
4. 통계등록부 자료의 내용과 범위

5.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등록부 자료의 보호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통해 수행한다. 다만, 요청기관의 장이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사·출력물을 제공하는 등 다른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과 요청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47조의 제목 “(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을 “(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통계자료”를 각각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장은”을 “장(통계등록부 자료는 통계청장으로 한정한다)은”으로,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3항”으로, “통계자료”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로 한다.

제4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가공·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제3항 중 “법 제31조제2항2호”를 “법 제31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따른”을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으로 한다.

④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제공기관”은 “통계청장”으로 본다.

제48조의 제목“(통계자료의 보호)”를“(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은”을 “장(통계등록부 자료는 통계청장으로 한정한다)은”으로, “인정되면”을 “인정되면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으로,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로 한다.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는 통계청장으로 한정한다)은 법 제29조의3제3항 및 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려면 요청기관의 장 또

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제공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후 폐기 등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① 데이터센터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과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 입수 및 관리, 목록 공개
2. 센터내 설치된 장비 및 시스템의 주기적 점검, 보안관리
3. 이용자의 이용신청, 장비의 반입 및 반출 등에 대한 승인 및 관리
4. 통계데이터 분석 교육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연구

②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5.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경우에”를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통계청장 또는”으로,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을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나”로, “대하여”를 “대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으로, “통계자료파일”을 “그 파일”로 한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2.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관리·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한다.

제52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법 제5조의4제1항”으로 한다.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구축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총조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으로 한다.

②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계법」 제5조의3”을 “「통계법」 제5조의4”로 한다.

③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으로 한다.

④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아목 중 “「통계법」 제5조의3”을 “「통계법」 제5조의4”로 한다.

⑤ 인구동향조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3제1항”을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⑥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2조의2(통계등록부의 종류 등)</u></p> <p>① <u>통계청장이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종류별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성별, 연령, 국적, 가구주관계 등 인구 특성에 관한 기본정보를 수록·관리하는 인구통계등록부</u> 2. <u>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형태 등 가구 특성에 관한 기본정보를 수록·관리하는 가구통계등록부</u> 3. <u>주택의 종류, 건축년도, 면적 등 주택 특성에 관한 기본정보를 수록·관리하는 주택통계등록부</u> 4. <u>사업체명, 주소, 조직형태, 산업분류, 매출액, 종사자, 대표자 정보 등 사업체에 관한 기본정보를 수록·관리하는 기업통계등록부</u> 5. <u>취업활동에 관하여 인구특성에 관한 기본정보 및 장애여</u>

부, 종사상지위,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등을 수록·관리하는 취업활동통계등록부

6. 아동가구에 관하여 아동과 부모의 인구특성에 관한 기본 정보 및 동거인·부모의 취업 활동, 아동의 장애여부, 다문화가구 여부 등을 수록·관리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7. 청년에 관하여 인구특성에 관한 기본정보 및 취업활동, 부모동거, 배우자유무, 자녀수 등을 수록·관리하는 청년통계등록부

8. 그 밖에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청장이 구축·운영하는 통계등록부

② 통계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통계등록부를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민간 자료를 말한다.

④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해 매년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의 종류와 구축항목
2. 법 제24조에 따라 통계등록부 구축을 위해 제공받은 행정자료 현황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현황
4. 법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이용 현황

제2조의2(총조사의 범위·방법)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 4. (생략)
- ② ~ ④ (생략)

제2조의3(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① 통계청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도지사

제2조의3(총조사의 범위·방법)

① 법 제5조의4제1항-----

-----.

1. ~ 4.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① ----- 법 제5조의5-----

“라 한다)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법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 부문별
· 기관별 통계에 관한 발전 계
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통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통
보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조의4(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5제1
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
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통
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법 제5조의5제2
항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

-----.

② -----
----- 법 제5조의5제3항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5(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① -----
----- 법 제5조의6제1항

-----.

② ----- 법 제5조의6제2
항-----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략)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 법 제18조제1항후단-----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① -----
----- 장(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청은 통계청장으로 한정한다)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

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신설>

-----.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
관”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통계
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
을 받은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을 경유
하여 공공기관에 행정자료 제공
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하
다)에 적어 통계청장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행정자료의 명칭

3.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 및 필
요성

4. 행정자료의 내용(성별로 구

분되는 행정자료의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된 내용을 말한다)과 범위

5.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
치

6. 행정자료의 제공방법

7.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과의 행정자료 제공
협약 사항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요
청한 행정자료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제2항에 따른 문서를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
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문
서를 통계청장에게 전달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

를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청장 또는 요청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4조제4항-----

1. ~ 4.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 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3. 행정자료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행정자료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5. 행정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포함한 물리적 조치

제39조의2 · 제39조의3 (생략)

<신설>

제39조의3 · 제39조의4 (현행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과 같음)

제45조의3(통계작성기관의 통계등록부 자료의 요청과 제공)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통계등록부 자료의 명칭

3. 통계등록부 자료의 사용 목

적

4. 통계등록부 자료의 내용과 범위

5.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등록부 자료의 보호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통해 수행한다. 다만, 요청기관의 장이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출력물을 제공하는 등 다른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계청

장과 요청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
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
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
청과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
라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
(이하 “통계이용자”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통계자료의 명칭
3.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4. 통계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자료의 보호방법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
공) ① -----
--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
자료-----

-----.

1. (현행과 같음)
2.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
자료-----
3.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
자료-----
4.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
자료-----
5.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
자료-----
6.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
자료-----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의 가공·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2항2호에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업체의 상호·업종·주소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신 설>

④ (생략)

② ----- 장(통계등록부 자료는 통계청장으로 한정한다)은 -- 법 제31조제3항-----
-----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
----- .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가공·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3항제2호-----

-----.

④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제공기관”은 “통계청장”으로 본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통계자료의 보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려면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제공한 통계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 통계자료의 사용 후 폐기 등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

-----.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는 통계청장으로 한정한다)은 법 제29조의3제3항 및 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려면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제공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후 폐기 등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제1항의 제한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② ----- 장(통계등록부 자료는 통계청장으로 한정한다)은 -----
----- 인정되면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

제48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① 데이터센터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과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 입수 및 관리, 목록 공개
2. 센터내 설치된 장비 및 시스템의 주기적 점검, 보안관리
3. 이용자의 이용신청, 장비의 반입 및 반출 등에 대한 승인 및 관리
4. 통계데이터 분석 교육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연구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이용

<신설>

② (생략)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생략)

<신설>

②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삭제>

5.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2.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관리·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략)

③ 제2항의 경우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자료의 처리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통계청장 또는 -----
--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나 -----

현황, 통계자료파일 및 입출력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1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조의2에 따른 총조사 등 각종 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 7. (생략)
- ② (생략)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생략)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 대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 그 파일 -----

제51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위탁) ① -----

----- 제2조의3-----

- 1. ~ 7.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총
조사에 관한 사무
2. (생 략)

-----.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
계등록부 구축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4제1항-----
--
3. (현행 제2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통계청 통계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2732 (042) 481 - 2426